식품법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1)]

B.E. 2522 (1979) 식품법 제5조, 제22조,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공중보건부령(ministerial regulation, 이하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1항. 유통이나 수입 목적으로 식품공장을 설립한 사람이 구체적 통제식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7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17에서 지정한 서류들(각 4부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항.Bis[2)]. (폐기)

2항.[3)] 1항과 관련한 레시피의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8을 사용해야 한다.

3항. 레시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그 등록 레시피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9를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수정할 레시피의 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레시피의 수정이 승인되면 원래의 증서에 그 수정 사실이 기록되거나 새로운 확인서나 새로운 통지서를 발급한다.

3항.Bis[4)] 판매 목적으로 식품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자가 레시피 등록증을 받은 후 수출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라벨(label)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라벨을 사용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서를 해당 라벨의 견본과 함께 허가권자인 공중보건부 식품의약품청 식품관리과에 점검 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그 사유서와 견본을 수령한 후 3일 내에 불승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식품 수출에 대해 해당 라벨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허가받은 자가 위에 언급한 사유서 및 라벨의 견본을 공중보건부 지방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방사무소는 허가받은 자로부터 그 사유서 및 라벨 견본을 받은 후 2일 내에 그 사유서를 라벨 견본과 함께 허가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

1) 1979년 11월 22일 관보 제96권/제193편/특별호 1쪽
2) 1항.Bis는 B.E. 2522 (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9호에 의해 폐기.
3) 2항은 B.E. 2522 (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9호에 의해 수정.
4) 3항.Bis는 B.E. 2522 (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9호에 의해 추가.

4항. 레시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그 허가서를 대체할 문서(이하 “대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20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20에서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체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래의 확인서와 동일한 형식의 문서의 표지에 “대체”라고 표시해야 한다.

5항. 본 보건부령에 따른 신청서들은 공중보건부 식품의약품청 식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제출되는 신청서는 공중보건부 지방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다.

B.E. 2522(1979)년 11월 17일 제정
분쏨 마띤
공중보건부장관

[별첨]

1. 식품레시피 등록 신청서
2. 식품레시피 등록증
3. 식품레시피 내용 수정 신청서
4. 식품레시피 등록증의 대체 확인서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참조)

주석: B.E. 2522 (1979) 식품법 제22조, 제31조 및 제36조는 각각 ‘식품레시피 등록 신청’, ‘등록된 레시피의 내용 수정 신청 및 그에 대한 승인’, ‘대체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관련기준 및 조건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었다.

B.E. 2522 (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7호.[5)]

주석: 판매 목적으로 식품공장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레시피 등록 확인을 받은 후에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출을 위해 수출 바이어가 요구하는 새로운 라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 레시피에 관한 기존의 라벨에 추가하여 새로운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견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새로운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식품법B.E. 2522 (1979)", 제31조에 의해, 레시피의 등록 및 레시피 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본 보건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었다.

B.E 2522(1979)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9호[6)]

주석: 판매 목적으로 식품공장을 설립하여 이미 식품 레시피를 등록한 사람이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출을 위해 수출 바이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등록 라벨과 다른 새로운 라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장려하고 원활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E 2522(1979)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에 보건부령 제7호의 내용을 추가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식품레시피를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과 새로운 라벨의 필요한 사유서 및 라벨 견본을 허가권자에게 점검 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었다.

프롬낫(Phromnat)
2019년 2월 20일 수정

---

5) 1979년 3월 23일 관보 제99권/제41편/39쪽
6) 1823년 8월 18일 관보 제100권/제134편/특별호 1쪽